

# KCGS Report

제15권 4호 | 통권 제184호

2025. 4.



한국ESG기준원

## KCGS Report 제15권 4호

발행일 : 2025년 4월 30일

발행인 : 이 정의

발행처 : 한국ESG기준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TEL: 02-3775-3339 [www.cgs.or.kr](http://www.cgs.or.kr)

제작 : 경성문화사 02-786-2999

등록NO : 영등포, 라00532

※ 이 보고서의 견해 및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ESG기준원에 귀속되며,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상기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해당 보고서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표시 바랍니다.

# KCGS Report

제15권 4호 | 2025. 4.

## ● ESG 동향

온실가스 고집약도 업종의 기후 및 환경 투자 분석	2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3

## ● Global News

1. 영국, 자연 금융 표준(Nature Finance Standards) 발표	26
2.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지속가능성 보고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	28

# 온실가스 고집약도 업종의 기후 및 환경 투자 분석

원소정\*, 이에원\*\*

-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에너지 해방(Unleashing American Energy)’ 행정명령 발표 및 EU의 ESG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Omnibus Package 개정안 발표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임
- ▶ 해외 정세와는 달리 국내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중립에 관한 정책 및 규제를 전과 같이 유지 혹은 강화하고 있음
- ▶ 규제 및 정책 변화와 관계없이 기후 위기 영향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기업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재무적/비재무적 영역에 직접적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 국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집약도를 산출하여 고집약 업종을 식별하고, 탄소 배출 완화를 위한 해당 업종의 특징적인 환경 투자 유형 분석함

---

---

## 서론: 연구 배경

### □ 국내외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트렌드

#### ○ 미국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2025년 1월 20일)과 함께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에너지 해방(Unleashing American Energy)’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기존 환경 규제를 완화 및 철폐함. 구체적 내용으로는 에너지 규제 완화 및 공급망 강화, 전기차 의무화 폐지, 미국의 광물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등이 있음. 또한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행정명령 발표 후 관련 재정적 지원을 즉시 중단할 것을 지시함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5년 2월 미국 루이지애나주 제8연방 항소법원에 SEC 기후공시와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를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미국 내 기후공시의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이 대두됨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KCGS ESG평가본부 환경파트 연구원, sojung@cgs.or.kr

\*\*KCGS ESG평가본부 환경파트 연구원, yeah1.lee@cgs.or.kr

- 유럽연합(EU)
  - 2025년 2월 26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ESG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Omnibus Package’ 개정안을 발표함. 지침 개정(안)을 통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EU-Taxonomy,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의무를 대폭 완화함
- 국내
  - 해외의 기후 관련 규제 및 기조 완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환경부는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3대 핵심과제로 ‘민생·안전1)’, ‘탄소중립2)’, ‘환경복지3)’를 선정함
  - 국내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계 부처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후테크(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모든 범위의 기술을 말함)’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4) 중임
  - 기획재정부·환경부는 2024년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함. 제4차 기본계획의 대상 기간(2026년~2035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시기를 포함하여 배출권거래제가 상향된 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함
- 국내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책 및 법·규제 현황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 정부는 20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5)(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및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최종 확정함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2022년 첫 시행함
  - 국내 배출권거래제
    -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정부에서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배출권)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임
    - 이 제도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적 수단임

1) ‘민생·안전’을 위해 △새로 짜는 범부처 기후위기 적응대책, △기후재난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물 관리 시스템, △대기질·수질 오염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

2) ‘탄소중립’을 위해 △도전적 감축목표와 실현 가능한 액션플랜, △산업·수송 등 부문별 맞춤형 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녹색산업 견인

3) ‘환경복지’를 위해 △국민 일상을 지키는 환경 안전망 구축, △국토의 자연 생태적 가치 증진 및 폭넓은 향유 기반 마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환경서비스

4)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관계부처 합동, 2025.2.5.)

5)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

-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환경 관련 정책 및 법·규제 현황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 탄소 다배출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에 대해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EU 내 탄소 감축 정책 달성 및 탄소 누출 방지의 목적으로 도입됨
  - 국제항공 탄소 상쇄·감축제도(CORSIA)
    - CORSIA는 국제항공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할 의무를 가지는 제도임
  - IMO 온실가스 배출 규제
    - 선박 에너지 효율 지수(EEDI / EEXI) 규제
      - : 신조 및 기존 선박의 단위 톤마일 이동 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을 EEDI 및 EEXI로 수치화함. 2023년부터 지수값이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제에너지효율증서(IEEC) 발급이 가능하고, 선내에 IEEC를 비치해야만 선박 운항이 가능한 제도임
      - 가. 신조 선박의 에너지효율설계지수 EEDI(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 나. 현존 선박의 에너지효율지수 EEXI(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 선박 탄소집약도 지표(CII) 규제
      - : 선박의 탄소 효율성을 평가/관리하기 위한 지표인 CII(Carbon Intensity Indicator)를 통해 선박의 실제 운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박 에너지 효율을 산출하고, CII 등급을 부여하는 규제임
-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환경 투자
  -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 분석 문헌
    - 국내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사례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분석 자료<sup>6)</sup>를 참고할 수 있음
    - 안지석(2022)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 86.8%를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음
    - 에너지 분야 내에서는 에너지 생산이 41.6%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분석함
    - 이는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확정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배출량에 따른 분석으로 국내 업체 중 배출권거래제 혹은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 온실가스 배출량 및 환경 투자 분석 필요성
    - 본 고에서는 국내 상장 기업이 공개 혹은 내부적으로 집계 중인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기반으로 업종별 배출량을 집약도 단위 산출 후 온실가스 고집약도 업종을 식별하여 환경

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22). 온실가스 배출현황 [웹페이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https://www.kier.re.kr/tpp/energy/B/view/1?contentsName=green\\_gas&menuId=MENU00961](https://www.kier.re.kr/tpp/energy/B/view/1?contentsName=green_gas&menuId=MENU00961)

투자 유형을 분석하고자 함

- 배출권거래제나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뿐 아니라 국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출액 원단위로 비교한 점에 본 분석의 의의를 둠
- 본 고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집약도를 기업의 대표적 부가가치 단위인 매출액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하여 생성한 지표로 정의함
- 이와 같은 집약도 개념은 업종별 배출 특성을 정량화할 수 있기에 업종별 배출량 비교 및 분석 시에 유용함
- 집약도를 통해 식별된 온실가스 고집약도 업종은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배출해야 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많은 산업군이므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환경 투자가 요구됨

## 국내 온실가스 집약도 업종별 분석 및 고집약도 업종 식별

□ 온실가스 고집약도 업종 선정 방법

○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생성 방법

- 본 고에서는 2023년 유가시장 및 코스닥 시장 일부 상장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관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를 생성함
- 집약도의 분자로는 2024 KCGS 환경평가<sup>7)</sup> 데이터 중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분모로는 2023년 기말 기준 개별 기업의 매출액을 사용함
- 집약도의 분자인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는 해당 기업이 최근 3개년 이상 집계하여 관리<sup>8)</sup> 중인 사업장에서 배출된 Scope 1과 Scope 2 배출량의 합산 값임

### 〈식 1〉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산출식

$$\text{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 \frac{2023\text{년 } Scope\ 1 + Scope\ 2\ \text{배출량 (tonCO}_2\text{eq)}}{2023\text{년 기말 기준 별도 매출액 (원)}}$$

- 기업이 영위하는 경제활동의 환경 영향도를 고려한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의 통계량을 분석하여 온실가스 고집약도 업종 식별
  - 일차적으로 KCGS 환경평가 시 사용하고 있는 업종분류체계<sup>9)</sup>를 차용하여 분류함
  - 필요에 따라 생산활동 혹은 영위 중인 경제활동 단계 등을 고려하여 세분류 작업을 진행하기도 함

7) 2024 KCGS 환경평가는 2023년을 평가대상연도로 함

8) 일부 기업의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등을 사유로 집계범위 상 변동이 있음. 다만 해당 사유는 집약도의 분모인 매출액에도 반영 되기에 산출된 집약도의 의미에는 큰 차이가 생기지 않음

9) 한국ESG기준원 홈페이지 > 업무영역 > ESG 평가 > ESG 평가 방법론 파일 17쪽에 수록됨

- 업종별로 분류된 기업들의 집약도를 활용한 평균, 분산 등 통계량을 생성한 후 업종별 온실가스 집약도 수준을 비교하므로 고집약도 업종을 식별함

□ 국내기업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업종별 현황

-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및 관리 중인 국내기업 업종별 현황 및 고집약도 업종 식별

〈표 1〉 2023년 국내기업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1) 열	(2) 열	(3) 열	(4) 열	(5) 열	(6) 열	(7) 열
2024 KCGS 환경평가 대상기업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업종	기업 수	평균	분산	최소	중간값	최대
<b>합계</b>	<b>511</b>	<b>2.01</b>	<b>42.04</b>	<b>0</b>	<b>0.4</b>	<b>74.74</b>
<b>철강/비철</b>	30	2.91	16.89	0.16	0.99	18.47
<b>유리/시멘트</b>	15	21.87	719.69	0.13	4.35	74.74
기계/금속가공	25	0.59	1.5	0.01	0.18	6.13
전기/전자	55	0.97	1.18	0.01	0.66	5.36
<b>석유/화학</b>	78	2.38	8.38	0.09	1.39	18.93
자동차/운송장비	34	1.08	10.78	0.03	0.4	19.29
섬유/의복	6	1.36	2.04	0.02	1.21	3.72
<b>종이/목재</b>	14	7	69.14	0.76	4.5	34.6
기타제조	10	0.23	0.04	0.03	0.18	0.57
음식료품	31	0.71	0.28	0.06	0.58	2.56
의약품	35	0.56	0.87	0.05	0.35	5.66
건설	17	0.14	0.08	0	0.07	1.21
<b>전기/가스_발전</b>	4	9.47	107.31	0.19	8.1	21.49
전기/가스_배관공급	5	0.12	0.01	0.03	0.09	0.26
<b>운수</b>	18	6.21	47.81	0.04	6.5	27.71
유통	31	0.19	0.07	0	0.06	0.95
금융	36	0.01	0	0	0.01	0.04
통신/정보서비스	13	0.39	0.16	0.01	0.16	1.11
미디어/엔터/게임	20	0.14	0.05	0.01	0.05	0.9
기타서비스	34	0.14	0.06	0.01	0.04	1.03

- 2024 KCGS 환경평가 대상기업 중 최근 3개년(2021~2023)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거나 공개 중인 기업은 총 511개 사이며, 업종별 분포는 위 〈표 1〉의 (2) 열과 같음
- 2024 KCGS 환경평가 대상기업은 총 942개 사로 전체 평가대상기업 중 약 54%의 기업이 최근 3개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 및 공개하고 있음
- 온실가스 배출 정보 공개율이 높은 상위 5개 업종은 통신/정보서비스(87% 공개), 전기/가스 발전(80%), 운수(75%), 석유/화학(60%), 음식료품(69%)으로 평균 공개율 보다 약 15~33%p 높음

- 온실가스 배출 정보 공개 수준이 낮은 업종으로는 섬유/의복(27%)과 기타제조(28%)로 평균 공개율 보다 약 26~27%p 낮은 수준임
- 국내기업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의 업종별 평균, 분산 등 기초통계 정보를 <표 1>의 (3) ~ (7) 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표 1>의 (3) 열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의 평균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위 업종부터 차례로 나열하면 유리/시멘트, 전기/가스\_발전, 종이/목재, 운수, 철강/비철임
- 한편 <표 1>의 (4) 열을 통해 앞서 언급한 평균 집약도 수치가 높은 다섯 개 업종의 경우, 집약도의 분산 역시 동일한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위 다섯 개의 업종을 온실가스 고집약도 업종으로 분류하여 보다 세세한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해당 업종들에 대하여 분석해 볼 수 있음

#### □ 온실가스 고집약도 업종에 대한 집약도 세부 분석

##### ○ 고로 기반 철강 제조

- 철강 및 비철 업종 내에는 철강 소재를 제조 및 가공하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철광석과 코크스<sup>10)</sup>를 사용하여 고로(용광로) 방식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실제 고로 생산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배출 집약도 평균은 약 16이며, 전기로를 이용하여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배출 집약도 평균은 약 3.6으로 네 배 이상의 집약도를 가짐
- 국내 철강 및 비철 산업의 경우, 고로 기반 생산 중인 기업들의 탄소 배출 관련 투자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음

##### ○ 시멘트 제조

- 유리 및 시멘트 업종 내에서도 시멘트를 제조하는 기업의 평균 배출 집약도는 약 48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배출 집약도를 가지는 업종임
- 시멘트 제조업의 경우, 석회석을 고온 가열하는 소성 과정 내에 열분해 반응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과 가열 시 사용되는 화석연료로 인한 배출이 주를 이룸
- 따라서 시멘트 제조업의 공정배출과 소성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배출과 관련된 환경 투자에 관하여 분석해 볼 수 있음

##### ○ 전기 및 가스 발전

- 전기 및 가스 발전 업종 내에는 에너지 발전 관련 주요 공기업과 일부 민간 발전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민간 발전사 중에서는 바이오 및 친환경 에너지 발전업을 영위하는 일부

10) 석탄을 가공하여 만들며 코크스로부터 이산화탄소가 생성됨 (박현정, 석탄에서 벗어나기: 포스코홀딩스 기후리스크 진단 2025)  
<https://fourclimate.org/ko/research/573>

기업이 포함됨

- 바이오 및 친환경 에너지 발전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전통적 방식의 열병합 발전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배출 집약도 평균은 약 18로 전체 전기 및 가스 발전업의 평균 집약도 수치인 4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임
- 따라서 전기 및 가스 발전 업종에서는 열병합 발전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탄소배출 관련 환경 투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해운 및 항공

- 운수 업종 내 포함된 기업들에 대해서 해운, 항공, 물류로 재분류하여 배출 집약도 평균치를 살펴보면, 순서대로 약 14, 8, 1이므로 해운과 항공의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가 물류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해상 운수와 항공업을 포함한 운수 업종의 경우, 사용하는 연료의 유형과 운송수단의 연료 효율성, 운송 거리 등이 탄소 배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배출 집약도가 집중된 해운 및 항공 업종 내 기업의 연료 효율성 및 거리당 배출량, 신연료 및 신기술 도입 여부 관련 환경 투자에 관하여 분석해 볼 수 있음

### 탄소배출 완화를 위한 환경 투자 유형 분석

□ 탄소배출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고집약도 업종의 주요 환경 투자 유형

- 온실가스 고집약도 업종의 주요 사례 분석은 업과 연관된 환경 투자 사례를 바탕으로 공통적인 특징에 따라 아래 세 가지 주요 환경 투자 유형으로 분류함
  - **친환경 에너지원 활용**: 화석연료 및 천연원료 대신 재활용 원료, 바이오매스 등의 친환경 에너지원을 활용한 탄소 배출 저감 방식
  - **운영 효율 개선 및 친환경 설비 투자 확대**: 운영 효율 개선 및 친환경 설비 투자 확대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탄소 배출 저감 방식
  - **CCUS 사업**: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는 배출된 CO<sub>2</sub>를 포집하여 활용/저장하는 기술로 탄소 배출 저감 핵심 기술

## 온실가스 고집약도 업종별 주요 사례 분석

### □ 철강업

- 주요 배출 요인은 고온 연소 및 화학반응에 따른 온실가스 직접 배출, 주된 감축 수단은 수소환원제철과 스크랩 활용 확대, 전기로 전환 등

〈표 2〉 철강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

분류	온실가스 감축 수단
친환경 에너지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 연료 활용: 석탄 기반 연료인 코크스를 대체하여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를 예열기와 가열로의 열 설비용 연료로 활용 시 철광석 환원 시 탄소가 배출되지 않고 수증기만 발생</li> <li>- 전기로 방식: 전력으로 철(스크랩)을 녹여 강재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친환경성 제고</li> </ul>
운영 효율 개선 및 친환경 설비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 부생수소 재이용: 철강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코크스 오븐 가스, COG<sup>11</sup>) 등을 정제 후 이용하여 부족한 그린수소 인프라 자원을 보완</li> <li>- 가열로 관리 및 운전 최적화 기술: AI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고로 도입을 통해 연료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li> </ul>
CCUS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CU 기술 실증사업 착수: 고로, 전로, 용융로 등에서 발생하는 고온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 및 포집하여 코크스 오븐에 주입하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재이용을 통해 탄소 배출을 감축</li> </ul>

### □ 시멘트업

- 주요 배출 요인은 석회석 분해 및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주된 감축 수단은 대체 연료로의 전환과 혼합재 비율 확대, 공정 내 발생된 폐자원의 다각적 활용

〈표 3〉 시멘트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

분류	온실가스 감축 수단
친환경 에너지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환연료 활용: 시멘트 주원료(석회석)를 가열하는 소성로의 주원료인 유연탄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함. 유연탄을 대체하는 열에너지원으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목재 등의 순환자원을 활용</li> </ul>
운영 효율 개선 및 친환경 설비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성로 설비 개조: 순환연료 맞춤형 완전연소 환경을 구축하는 소성로 설비를 개조함. 이를 통해 유연탄 사용량 감축되어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가능</li> <li>- 순환연료 투입 버너 개조: 순환연료 사용 증대 및 연소효율 증가를 위해 합성수지를 일정 형태로 가공해 소성로에 투입하는 시스템 도입</li> </ul>
CCUS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물 탄산화: 다량의 CaO를 함유하고 있는 염소더스트와 배가스의 CO<sub>2</sub>를 반응시켜 건축재료인 탄산칼슘(CaCO<sub>3</sub>), 산업원료인 염화칼륨(KCl)으로 재생산하여 건설소재 및 화학제품으로 활용</li> <li>- 이산화탄소 반응 경화 시멘트 개발: 기존 물 대신 CO<sub>2</sub>와 반응해 굳어지는 이산화탄소 반응 경화 시멘트는 CO<sub>2</sub> 흡수 촉진, 빠른 경화, 높은 강도 확보, 일반 클링커 대비 소성 온도가 낮아 열에너지 사용 절감 효과</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환원료 활용: 산업 부산물인 슬래그를 가공한 슬래그 미분말을 시멘트와 혼합해 슬래그시멘트 생산</li> </ul>

11) 석탄을 가열해서 코크스를 만드는 공정 중 고온에서 발생. 수소(55~60%)와 메탄, 일산화탄소 등으로 구성되는 가연성 가스

□ 발전업

- 주요 배출 요인은 공정 내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주된 감축 수단은 재생에너지 전환 및 신에너지 확대, CCS 기술 도입

〈표 4〉 발전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

분류	온실가스 감축 수단
친환경 에너지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생에너지 활용한 발전: 태양광, 육/해상 풍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으로 친환경 에너지 공급</li> <li>- 수소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확대: 수소 기반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수소도시' 구축 사업을 기획 중</li> </ul>
운영 효율 개선 및 친환경 설비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충전소 구축: 상용차의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확대</li> </ul>
CCUS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 광물화 기술 개발: 발전소 내 배출되는 탄소와 폐자원을 활용하여 산업소재로 재생산하는 신기술 개발 추진</li> <li>- 이산화탄소 포집 및 액화탄산 생산: 열병합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액화탄산으로 생산하는 CCS 기술로 액화탄산은 유통, 반도체, 조선, 농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li> <li>-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이산화탄소를 탄산화 슬래그를 생산해 육상(폐갱도)에 저장하는 사업 추진</li> </ul>

□ 항공 및 해운업

- 주요 배출 요인은 연료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고, 주된 감축 수단은 SAF 도입 및 저탄소 선박 연료 등

〈표 5〉 항공 및 해운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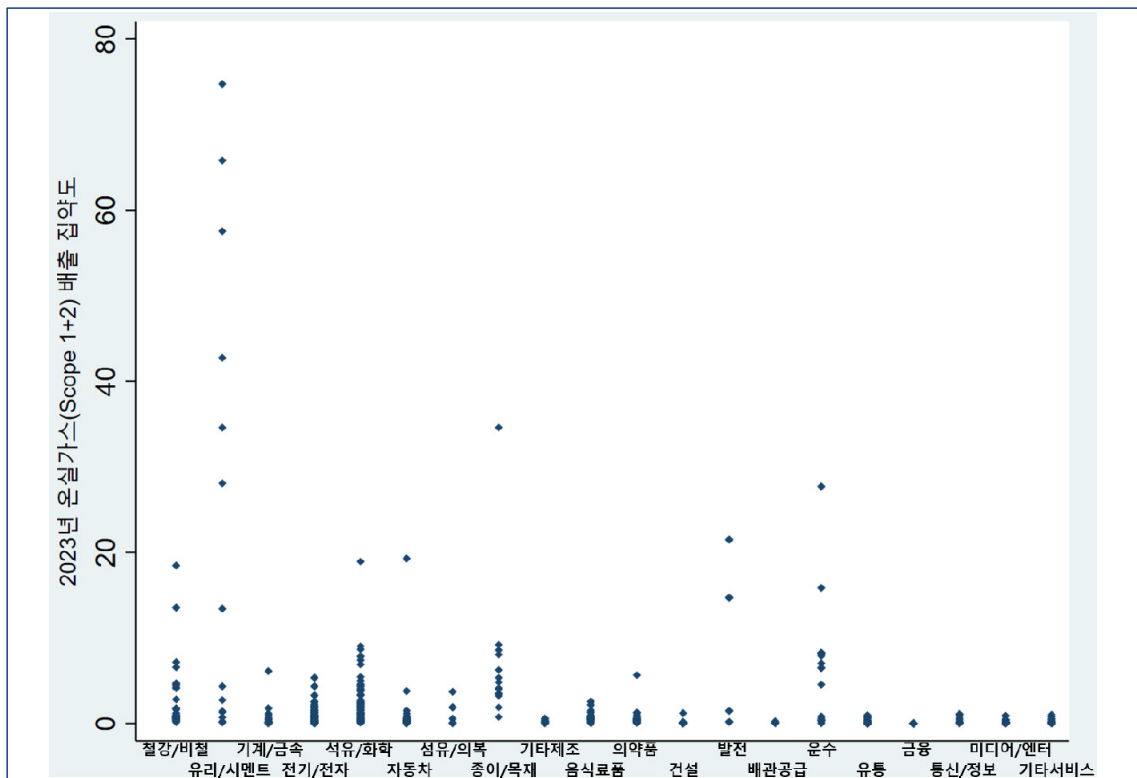
분류	온실가스 감축 수단	
친환경 에너지원 활용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항공유(SAF) 활용: 화석연료가 아닌 폐식용유, 생활폐기물 등을 재활용한 항공유로 연료를 대체</li> </ul>
	해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선박유 활용: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등)와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선박유를 혼합해 선박유 국제품질 기준에 맞게 생산되는 탄소 저감 원료를 활용</li> </ul>
운영 효율 개선 및 친환경 설비 투자 확대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 운영 효율 개선: 기내 전력 공급을 위한 장치로 항공유를 연소시켜야 하는 APU 대신 지상전원장치인 GPS, GPU로 대체해 지상 대기중 연료 소모를 최소화</li> <li>- 항공기 에너지 효율 최적화: 비행계획 효율 최적화, 항공기 중량 관리, 엔진 물 세척 등으로 연료 절감 및 에너지 효율 최적화</li> </ul>
	해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 육상 전력 확보: 선박이 정박한 동안 육상전력 AMP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탄소발자국 감소 효과</li> <li>- 선박 에너지 효율 최적화: 연료 절감을 위해 선체 저항 감소 디자인, 저마찰 도료 사용, 엔진 효율 개선 등으로 연료 절감 및 에너지 효율 최적화</li> <li>- 무탄소연료 수송 사업 및 추진선 개발: 청정 암모니아·수소를 수송하고, 이를 연료로 활용한 추진선을 개발/투자</li> </ul>
CCUS 사업	해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CS(포집 후 저장) 사업: 화석연료 사용시 발생하는 CO2를 액화해 폐가스전이나 폐유전에 주입 혹은 매립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해상 운송하는 사업</li> </ul>

## 결론 및 제언

- 국내 온실가스 배출 요인 및 대응 현황
  - 온실가스가 집약적으로 배출되는 업종의 공통점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공정과 고온 중심의 공정으로 인한 다량의 에너지 소비
  - 이에 대응하여 국내 주요 기업들은 화석연료를 친환경적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폐자원 활용을 확대하여 탄소 배출 저감을 이행
  - 철강, 시멘트, 발전, 항공 및 해운 업종의 배출 요인별 대응 현황
    - (철강) 석탄 기반의 코크스 활용한 고로(용광로)를 통해 최대 1,800°C 고온에서 철광석을 철로 환원하는 공정에서 대규모의 온실가스 배출이 이루어짐. 이에 대하여 업종 내 주요 기업들은 수소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및 공정 내 폐자원을 재투입하여 활용함
    - (시멘트) 유연탄(석탄)을 주원료로 활용하고, 고온(1,450°C 이상)에서 석회석 소성(가열) 공정으로 막대한 열에너지를 필요로 함.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원 전환을 위해 시멘트 주원료(석회석)를 가열하는 주원료(유연탄)을 대체하기 위해 순환연료(폐자원)를 활용함
    - (전기 및 가스 발전) 석탄, LNG 등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다량 발생됨. 따라서 재생에너지 및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의 전환과 배출되는 탄소를 소재 또는 액화탄산 등으로 재생산하는 방안을 통해 탄소 배출 절감을 실천하고 있음
    - (항공 및 해운) 고탄소 항공유 및 고험방 버커유 등의 화석연료 활용으로 연료 연소 시 막대한 CO<sub>2</sub>가 배출됨.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원 전환을 위해 지속가능항공유 및 바이오선박유를 활용함
- 정책적·기업적 제언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에너지 해방(Unleashing American Energy)' 행정명령 발표 및 EU의 ESG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Omnibus Package 개정안 발표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
  - 해외 정세와는 달리 국내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중립에 관한 정책 및 규제를 전과 같이 유지 혹은 강화하는 중
    -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3대 핵심과제 중 탄소중립과 환경복지가 포함됨
    - 작년 말 확정된 제4차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유상할당을 확대함
  -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의 영향이 명확해짐에 따른 기업의 선제적 대응 촉구
    -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에너지 비용의 급등, 기후 관련 소송 증가 등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와 연결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기업은 단순히 규제 및 정책 변화에 따르는 대응 차원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후 및 환경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촉구됨
- 이전에 불충분했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전략을 재정비하고 국제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이행의 발판으로 활용 가능
- 기후행동추적(Climature Action Tracker)은 한국의 기후 정책과 목표를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평가함<sup>12)</sup>
- 이는 전세계가 한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 및 이행할 경우, 지구 온도가 3°C 상승할 수 있는 수준임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구조의 전환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재생에너지 생산 및 소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회 강화 등 전환을 위한 시기로 활용할 수 있음
- 탄소중립 전환은 단기간에 이행이 어려운 만큼, 기후 대응 기초가 약화된 현 시점을 재생 및 신재생에너지 기회 확대와 에너지 거버넌스 개선,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 전환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별첨 1] 2023년 국내기업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산포도



12) Climate Action Tracker. (n.d.). South Korea.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south-korea/>

#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박은빈\*

- ▶ 2017년 자율공시로 시작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는 2019년 의무공시로 전환하면서 현재까지 공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2024년 XBRL 공시 체계를 도입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의 고도화 및 이를 통한 실질적인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음
- ▶ 다만 향후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의 성장과 이를 기반한 실제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일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를 참고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 정보 제공, 공시 대상 기업의 범위 확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정보의 분석 및 활용성 확대, 해외이용자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 검토 배경 및 목적

- 2017년 자율공시로 시작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는 2026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그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에 대한 활성화와 발전 논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해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에 대한 문헌과 자료는 부족함
  -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는 2017년 자율 공시 시행 후 10년 만인 2026년 전 코스피 상장사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는 2024년 XBRL 공시 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확대 및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의 활성화 및 발전 논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해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에 대한 자료와 문헌은 부족 부족함
- 이에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 전반을 살피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의 확대 및 성장에 대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실제 국내 기업지배구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한국ESG기준원 ESG정보분석센터 선임연구원, eunbin@cgs.or.kr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 OECD는 1995년부터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1999년 5월 기업지배구조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을 제정하였으며<sup>1)</sup>,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OECD 회원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이 원칙을 참고하여 각 국가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을 마련함<sup>2)</sup>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는 OECD의 기업지배구조원칙에 따라 각 회원국 등이 마련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서 일본 등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음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혹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국가들은 법이나 규제 등으로 기업의 모범규준 이행을 규율하고 있는데, 미국 등에서는 상장 규정 등을 통해 강제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sup>3)</sup>, 일본과 우리나라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통해 모범규준의 이행을 Comply or Explain 방식(이하 'COE 방식')으로 밝히도록 함
    - 다만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일부 코드만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 제시함
- 따라서 이하에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를 분석하면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한 정보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관계 등을 함께 논의함

##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

### (1) 연혁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 이상의 글로벌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내 기업 특성에 맞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1999년 3월 민간 차원의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를 출범하여<sup>4)</sup> 그해 9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발표하고, 이후 설립된 (사)한국ESG기준원에서 2003년, 2016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개정함

1) 이성봉·이형근(1999),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13-18.

2) 1999년 상반기 기준 약 27개 국가에서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혹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성봉·이형근(1999), 위 단행본, pp.100-101 참고.

3) 장윤제(2018.8), 해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제·개정 및 적용 동향, KCGS 리포트, pp.8-10.

4) 재정경제부 보도자료(1999.3.16),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출범, 우리나라는 민간 주도로 기업지배구조원칙을 제정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짐으로써 민간 차원의 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출범됨. 이성봉·이형근(1999), 위 단행본, pp.100-102 참조.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 2017년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응하여 한국거래소는 2017년 3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자율 공시 제도를 시행함
  - 우리나라는 1999년 모범규준을 제정하였으나 실제 이행을 위한 시행기제(implementation mechanism)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음<sup>5)</sup>
  - 2017년 OECD 발표(2016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OECD 회원국 35개국을 포함한 조사대상 46개국 중 45개 국가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의 시행을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무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sup>6)</sup>
  - 이에 한국거래소는 2017년 3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자율)공시 제도를 시행함
- 자율 공시로 시작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2019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 대상 의무공시 제도로 전환된 후 현재까지 의무 공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2026년까지 전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 2017년 시작된 자율공시는 첫 해 실시율이 10% 이하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하였으며, 한국거래소는 2019년부터 연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를 실시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은 2022년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24년 5천억 이상 코스피 상장사까지 확대되었으며 2026년에는 전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공시 대상이 될 예정임
-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의 확대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와 정보 활용 등을 위하여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XBRL 공시 체계를 도입함
  - XBRL은 주로 재무정보 보고 시 활용되는 전산 언어지만 표준화된 공시 체계 및 공시 정보 데이터화를 통하여 효과적인 정보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 등을 바탕으로 현재는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등에도 적용되는 추세임<sup>8)</sup>
  - XBRL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는 현재는 시행 초기로서 수집된 통합 정보에 대한 접근이 아직은 불가능하지만 향후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과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5) 이승희(2017.10), 기업지배구조 comply or explain 공시현황 평가, 이슈&분석, 경제개혁연구소, p.1.

6) OECD(2017.09),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17, pp.22-23.

7) 이승희(2017.10), 위 논문, pp.3-5.

8) XBRL의 지속가능성 공시 적용 동향 및 사례 관련하여 정선아(2025.3.31), XBRL 기반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동향 -'IFRS 지속가능성 공시 텍소노미'를 중심으로, KCGS Report 15권 3호, 한국ESG기준원, pp.9-18. 참고

〈표 1〉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 연혁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연도	지배구조 모범규준
	1999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
	2003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1차 개정
	2016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2차 개정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자율 공시 시행	2017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시행 (코스피 연결자산총액 2조원 이상)	2019	
	2021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3차 개정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 확대 (코스피 연결자산총액 1조원 이상)	2022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 확대 (코스피 연결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024	
• XBRL 공시 도입		
• (예정)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 확대 (전 코스피 상장사)	2026	

자료: KCGS(저자 작성)

## (2) 주요 특징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관계

-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구분되는 10개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과 28개의 세부원칙에 대한 보고서로, 해외 주요국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혹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는 상이함
-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실질적인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이지만 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외에 별도로 마련된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sup>9)</sup>을 기반으로 구성됨에 따라 기업의 모범규준 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 일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에, 영국은 사업보고서 내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준수 여부와 미준수 시 설명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이행을 COE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외에 별도로 마련된 10개의 핵심원칙을 기반으로 구성됨에 따라 핵심원칙(및 28개의 세부원칙)과 관련된 일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코드의 이행만을 COE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전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9)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내에 별표로 정하고 있음

## 보고서 구성 및 작성 방식

-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과 28개 세부원칙에 대한 작성 부분임
-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크게 ①15개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현황, ②28개 세부원칙 작성 부분, ③기타(기업 개요, 기업지배구조 일반 정책, 기타사항)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중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부분은 15개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과 28개 세부원칙에 대한 작성 부분임
  - 28개의 세부원칙은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내에 별표로 제시된 10개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세부원칙임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10개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하여 COE 방식으로 작성해야하지만<sup>10)</sup>, 실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10개의 핵심원칙을 세분화한 28개의 세부원칙에 대한 변형된 COE 방식의 보고서임
- 15개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은 기업이 O/X로 작성하며, 28개 세부원칙에 대한 기재는 기본적으로 COE 방식을 따르지만 일본, 영국 등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이행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COE와는 다소 상이함
-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15개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를 선별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기업이 직접 O/X로 제시하도록 함
- 10개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28개의 세부원칙은 ①해당 세부원칙 준수 여부 서술 부분, ②해당 세부원칙과 관련된 정보 제시 부분, ③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향후 계획, 보충설명 작성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세부원칙에 대하여 준수 여부를 밝히고 미준수시 그 사유와 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COE 방식을 따른다고 할 수 있지만 1)준수/미준수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서술로 모호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 2)준수/미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세부원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본, 영국 등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 기제로 사용되는 COE 방식과는 다소 상이함
  - 현재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각 세부원칙에 대하여 기업의 준수/미준수 입장을 서술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은 기업의 준수/미준수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보다는 준수/미준수 판단이 모호하도록 서술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28개 세부원칙에 대한 해당 기업의 준수 입장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이용하는 이용자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분석자 입장에서도 세부원칙 준수율 등과 같은 수치적 정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음

10)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 ①세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인 별표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의 준수현황과 미준수시 그 사유 등을 기재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또한 각 세부원칙의 준수/미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세부원칙과 관련된 정보나 설명 등을 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본, 영국 등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 기제로서의 COE 방식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음

### 공시 대상

- 현재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는 연결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6년 전 코스피 상장사로 그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나, 전체 상장사가 아닌 코스피 상장사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를 가짐
  - 2019년 연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 대상으로 시작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는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 현재 연결 자산총액 5천억 이상 코스피 상장사까지 확대되었으며 2026년부터는 전 코스피 상장사로 그 대상이 더욱 확대할 예정임
  - 그러나 현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에 따라 현재 제도 내에서는 코스피 상장사만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 대상이 된다는 한계가 있음
  - 한국거래소의 또 다른 시장인 코스닥, 코넥스 상장사 등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근거가 없어 해당 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수준을 파악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함

### 주관 기관 및 결과 분석 등 발표

-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를 운영하여 매년 공시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점검하고 기업지배구조 현황 분석, 정정공시 요청, 우수공시 법인 시상 등을 수행함
  -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매년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음
  - 또한 매년 공시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전수 점검하여 기업지배구조 현황 분석, 정정공시 요청, 우수공시 법인 시상 등을 수행함

### 해외 이용자 접근성

-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관련하여 해외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영문 정보는 영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모범규준과 개별 기업이 영문으로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 관련하여 해외 이용자의 접근성이 다소 제한적임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이나 기업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 등 해외 이용자들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와 이를 토대로 한 기업지배구조 현황 전반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영문 정보가 부재함
  - 현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관련하여 해외 이용자들이 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영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개별 기업 차원에서 영문으로 공시한 영문 기업지배구조보고서임  
 - 한편, 영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이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개별 기업의 영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또한 용어 등이 통일되지 않은 모습을 보임

### (3) 공시 현황

- 2017년 시행 당시 70사에 그쳤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기업 수는 2019년 의무 공시 시행으로 200사에 이르렀으며,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2024년 총 526사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함

〈표 2〉 우리나라 연도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단위: 사

구분	자율공시		의무공시 (연결 자산총액 기준)					
			2조원 이상			1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금융회사1)	39	40	39	40	40	41	39	38
비금융사	31	55	161	171	175	304	327	488
전체	70	95	200	211	215	345	366	526

주: 1)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보다 먼저 공시하는 기업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로 갈음함

자료: 한국거래소 보도자료(2024.6.3),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접수 완료

## 일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

### (1) 연혁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 OECD의 기업지배구조원칙이 발표된 1999년부터 도쿄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에게 지배구조를 강화하도록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상장회사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원칙(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for Listed Companies)을 제정하고 2015년 일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Japan's Corporate Governance Code)을 최초 제정한 후 2018년과 2021년 개정함<sup>11)</sup>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 도쿄증권거래소는 2004년 상장회사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제정한 후 2006년부터 전체 상장 기업 대상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를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전체 상장사 대상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11) Tokyo Stock Exchange(2023.03), TSE-LISTED Companies White Paper on Corporate Governance 2023, p.10.

- 도쿄증권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시행 첫해인 2006년부터 공시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2007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백서(White Paper on Corporate Governance)를 발간하였으며 현재까지 격년 발간하고 있음
- 도쿄증권거래소는 2008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에 XBRL 공시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활용 등이 가능해짐<sup>12)</sup>
  - 도쿄증권거래소는 2008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에 XBRL 체계를 도입하여 대량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 분석, 활용 등이 가능해짐
  - 이를 토대로 도쿄증권거래소 홈페이지 상에는 지배구조 관련 특징으로 기업 검색 등이 가능함<sup>13)</sup>

〈표 3〉 일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 연혁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연도	기업지배구조원칙, 지배구조 모범규준
	2004	• 상장회사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원칙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for Listed Companies) 제정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시행	2006	
• 기업지배구조백서(TSE-Listed Companies White Paper on Corporate Governance) 발간 시작	2007	
• XBRL 공시 도입	2008	
	2015	• 일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Japan's Corporate Governance Code) 제정
	2018	• 일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1차 개정
	2021	• 일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2차 개정

자료: Tokyo Stock Exchange(2023.03), TSE-LISTED Companies White Paper on Corporate Governance 2023, p.10 참고. 저자 수정.

## (2) 주요 특징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관계

- 일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일본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을 COE 방식으로 규율하는 수단임
  - 일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에는 개별 기업이 83개의 코드로 구성된 일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하여 미준수 코드와 사유 등을 밝히도록 하여 일본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을 COE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음
  - 또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기업이 밝혀야 하는 정보들을 각 코드와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 모범규준의 이행을 규율하고 있음

12) Tokyo Stock Exchange(2023.03), 위 보고서, p.2.

13) <https://www.jpx.co.jp/listing/cg-search/index.html> (최근접속일:2025.04.24.)

#### 보고서 구성 및 작성 방식<sup>14)</sup>

- 일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크게 ①모범기준 이행을 규율, ②모범기준에 따른 기업의 정보 제시, ③기타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 제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 이행을 COE 방식으로 규율하는 수단으로, 개별 기업이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 중 미준수하는 코드를 밝히고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함
  - 이를 바탕으로 일본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의 각 코드별 이행률 등의 정보 산출이 가능하며, 실제 일본 기업지배구조백서는 83개에 이르는 일본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의 각 코드별 이행률 정보를 제시하고 있음
- 또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에 따라 각 기업이 밝혀야 하는 특정 정보에 대하여 해당 코드와 관련 정보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 외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도쿄증권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 관련하여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들, 예컨대 자본의 구성, 기업의 속성, 이사회, 감사기구, 내부통제 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도록 함
- 일본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은 상장 시장별로 그 수준을 상이하게 적용하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해당 기업이 상장된 시장별로 작성 항목 등을 구분함
- 도쿄증권거래소의 상장 시장은 Prime, Standard, Growth로 구분되는데, 일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상장 시장별로 모범기준 코드 수준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도록 함
  - Prime 시장 상장 기업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의 모든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 원칙(Principles), 보충원칙(Supplementary Principles)이 적용되는 반면, Standard 시장 상장 기업은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은 모두 적용되지만 원칙(Principles)과 보충원칙(Supplementary Principles) 중에서 Prime 시장 상장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코드를 제외한 코드만이 적용되며, Growth 시장 상장 기업은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만 적용됨
-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에 따른 기업의 정보 제시 부분 또한 Prime과 Standard 시장 상장 기업에 한해 적용되고 Growth 시장 상장사는 해당 부분을 작성하지 않음
- 일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지난 보고서와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기업이 직접 변동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매년 공시해야 하는 보고서이지만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기본 정책과

14) 일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구성 및 작성 방식은 Tokyo Stock Exchange(2024.4), Preparation Guidelines for Corporate Governance Reports 및 일부 기업이 실제 도쿄증권거래소에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참고함

- 입장, 특정 정보 등은 매년 변동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 정보가 반복 공시되기도 함
- 일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지난 보고서와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정보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변동 표기하게 하여 이용자가 해당 부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특히 특정 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매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확인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유용할 수 있음

### 공시 대상

-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임
- 일본에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가 시행된 2006년부터 도쿄증권거래소 전체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이었으며, 거래소 통합, 시장 신설, 시장 재편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현재까지 전체 상장사에 대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를 시행하고 있음

### 주관 기관 및 결과 분석 등 발표

- 도쿄증권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시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상세 분석하여 기업지배구조백서를 격년 발행하고 있음
- 도쿄증권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개정 혹은 지배구조 관련 주요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수시 개정하고 이를 기업들에게 안내함
- 도쿄증권거래소는 공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상세 분석하여 2007년부터 최근 2023년까지 9회 걸쳐 기업지배구조백서를 발행함<sup>15)</sup>

### 해외 이용자 접근성

- 도쿄증권거래소는 영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영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영문 기업지배구조 백서 등을 제공하여 일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 및 기업지배구조 정보에 대한 해외 이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함
- 특히 2007년부터 2023년까지 9회 발행한 모든 기업지배구조백서를 영문으로 제공하여 일본 기업지배구조 현황에 관심을 가지는 해외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하고 있음<sup>16)</sup>
- 또한 도쿄증권거래소는 Corporate Governance Information Search 기능을 영문으로 제공하여 해외 이용자 또한 지배구조 관련 특징으로 기업 검색 등이 가능함<sup>17)</sup>

15) 2025년 4월 말 현재 2025년 백서는 아직 발간되지 않음

16) <https://www.jpx.co.jp/english/equities/listing/cg/02.html> (최근접속일: 2025.04.24.)

17) <https://www2.jpx.co.jp/tseHpFront/CGK020010Action.do?Show=Show> (최근접속일:2025.04.24.)

## (3) 현황

- 일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기업 수는 2006년 시행 당시부터 2012년까지 약 2,300여사 내외를 유지하다 2014년 3,400사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2년 기준 3,770사를 기록함
- 2006년 일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시행 당시 2,356사에 이르던 공시 기업 수는 2012년까지 약간의 증감을 거쳤으나 비교적 큰 변동 없이 2,300사 내외를 유지함
- 2013년 도쿄증권거래소와 오사카증권거래소가 통합하면서 도쿄증권거래소에 JASDAQ 시장이 신설되고 도쿄증권거래소 상장 기업 수가 크게 증가하여 201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기업 수는 2012년 대비 약 50% 가량 증가한 3,414사를 기록함
-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총 3,770사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함

〈표 4〉 일본 연도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sup>1)</sup>

기준일	2006. 10.31	2008. 8.21	2010. 9.10	2012. 9.10	2014. 7.14	2016. 7.14	2018. 7.13	2020. 8.14
TSE First Section	1,687	1,717	1,699	1,680	1,814	1,956	2,098	2,172
TSE Second Section	495	466	443	419	545	539	511	480
Mothers	174	195	182	176	194	239	256	326
JASDAQ <sup>2)</sup>					861	773	729	699
<b>Total</b>	<b>2,356</b>	<b>2,378</b>	<b>2,294</b>	<b>2,275</b>	<b>3,414</b>	<b>3,507</b>	<b>3,594</b>	<b>3,677</b>

기준일	2022. 7.14 <sup>3)</sup>
Prime	1,837
Standard	1,456
Growth	477
<b>Total</b>	<b>3,770</b>

주: 1) 일본 연도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은 격년 발행되는 일본 기업지배구조백서에서 분석 대상으로 제시되는 기업 수로 같음함

2) JASDAQ 시장은 2013년 도쿄증권거래소와 오사카증권거래소가 통합하면서 도쿄증권거래소에 신설된 장임(기존에는 오사카 증권거래소에 존재)

3) 도쿄증권거래소는 2022년 4월 기준의 시장을 Prime, Standard, Growth로 재편함

자료: Tokyo Stock Exchange(2015.03), TSE-LISTED Companies White Paper on Corporate Governance 2015, pp.1-2; Tokyo Stock Exchange(2023.03), TSE-LISTED Companies White Paper on Corporate Governance 2023, pp.1-2.

## 마치며

### -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 비교 및 시사점 도출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를 간략히 비교하면 아래 <표 5>와 같음

<표 5>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 비교

	한국	일본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제·개정 기관	(제정)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개정) 한국ESG기준원	도쿄증권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운영 기관	한국거래소	도쿄증권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 시행 시기	(자율) 2017년 (의무) 2019년	(의무) 2006년
XBRL 공시 도입 시기	2024년	2008년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관계	-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중 제한된 코드의 이행을 COE 방식으로 규율하는 수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해당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전체 이행 상황 파악 불가능	-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이행을 COE 방식으로 규율하는 수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해당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전체 이행 상황 파악 가능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	(2019-2025년) 특정 규모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 (2026) 전체 코스피 상장사 (예정)	도쿄증권거래소 전체 상장사 (Prime, Standard, Growth 시장 전체 상장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구성 방식	- 15개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현황 - 28개 세부원칙 관련 정보 제시 - 기타 정보 제시(기업 개요, 기업지배구조 일반 정책, 기타사항)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 COE 방식 제시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른 정보 제시 - 기타 정보 제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방식	- 28개 세부원칙 이행 관련하여 변형된 COE 방식으로 작성 - 28개 세부원칙과 관련된 정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 - 15개 핵심지표는 O/X로 작성 - 전체 대상 기업 동일 작성 - 변동사항 별도 표기 기능 부재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의 이행에 대하여 COE 방식으로 작성 - 기타 정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 - 시장별로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및 정보 공개 관련하여 작성 항목 구분 - 변동사항 별도 표기 가능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결과 분석 및 정보 활용	- 2022년부터 공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한 간략한 분석 결과 매년 발표	- 2007년 기업지배구조 백서 발행 시작 - 기업지배구조백서 격년 발행하여 2023년까지 총 9회 발행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관련 영문 자료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 각 기업이 영문으로 공시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기업지배구조보고서백서

자료: KCGS(저자 작성)

-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 및 발전하고 있으나 향후 더욱 고도화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일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를 참고하여 ①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 정보 제공, ②공시 대상 기업 범위 확대, ③기업지배구조 정보 분석 및 활용성 확대, ④해외이용자 접근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재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이행에 대한 정보 제공에 있어 그 역할이 제한적이지만, OECD 보고서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에 대한 당국의 모니터링이 권고되는 만큼<sup>18)</sup>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참고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중 미준수 코드를 밝히고 설명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근거로 하여 코스피 상장사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향후 실질적인 국내 기업지배구조 수준의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코넥스 시장 상장사 등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전체 상장사가 의무 공시 대상이지만 상장 시장별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적용과 공시 항목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참고하여, 시장별 공시 항목의 적용을 구분하여 소규모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공시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한 종합 정보로 제공되고 있는 것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대한 간략한 분석 결과로<sup>19)</sup>, 한국거래소는 2024년 XBRL 공시 체계를 도입하여 아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지배구조 정보 제공 및 활용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향후 이를 토대로 정보의 제공 및 활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도교증권거래소가 XBRL 공시 체계를 토대로 3,700여사에 이르는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종합 분석하고 백서를 발간할 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정보로 기업 검색이 가능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을 참고하여 국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정보의 제공과 활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관련하여 현재 영문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는 영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개별 기업이 영문으로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로, 국내 기업지배구조의 전반적인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외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임에 따라 해외 이용자 접근성 제고의 노력이 필요함
  - 일본 등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기업지배구조백서를 영문으로 발간하여 일본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와 일본의 전반적인 기업지배구조 수준 및 현황에 대한 해외 이용자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영문 자료를 더욱 확대 제공하여 해외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8) OECD(2023.09),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23, p.9.

19) 한국거래소(2022.12), '22년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결과 분석; 한국거래소 보도자료(2023.12.7.), '23년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점검 및 분석 결과 발표; 한국거래소 보도자료(2025.02.14.), '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사전 예고(붙임 자료 참고)

# Global News

## 1. 영국, 자연 금융 표준(Nature Finance Standards) 발표

강혜민\*

- 지난 3월 25일(현지시간), 영국 정부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자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연 금융 표준을 발표함<sup>1)</sup>
  -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가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공식 표준<sup>2)</sup>이며, 영국은 이를 통해 녹색 금융을 국가 성장의 중심축으로 삼고자 함
  - 이번에 만들어진 포괄적 원칙 표준은 기업, 토지 관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시장 주도형 표준 개발 프로세스<sup>3)</sup>에 따라 작성됨
  - 해당 표준은 자연 시장을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공함
    - 지원 가능한 대상으로는 습지 복원, 수질 개선, 홍수 대응력 강화, 새로운 서식지 조성 등이 있음
- 자연 금융 표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연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의 생성, 거래, 저장 과정을 정의함
  - 크레딧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 신뢰성 있는 환경 성과 측정, 크레딧에 대한 검증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 특정 조직이 아닌 역할 기반으로 표준이 설계되어 크레딧 공급자, 검증자, 구매자 등 각 주체별 기준을 제공함

〈표 1〉 자연 금융 표준 주요 내용

구분	제목	내용
0장	도입	배경, 자연 시장의 역할 및 특성
1~3장	기본 정보	적용 범위, 용어 정의 및 약어
4장	시장 참여자 공동 원칙	정보의 투명성, 크레딧 측정 기준, 시장 참여자 및 중개자의 역할, 정보의 시점 공개
5장	크레딧 판매	크레딧 공급자의 책임, 크레딧의 추가성(Additionality), 검증(Validation and verification), 의도치 않은 부작용 방지, 지속성, 지역사회 소통
6장	크레딧 구매	투명한 상태, 소유권 관리
7장	등록 시스템	레지스트리의 기능, 정보의 상호운용성
8장	거래 프로세스	시장 접근 용이성, 크레딧 중복 계산 방지
-	부록 및 참고자료	정보 신뢰성 검토 기준, 참고 문헌

\* 한국ESG기준원 ESG평가본부 연구원, hmkang@cgs.or.kr

1)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world-leading-nature-finance-standards-launched-to-encourage-green-investment>

2) BSI Flex 701 v2.0 Nature Markets - Overarching Principles and Framework, <https://www.bsigroup.com/en-GB/insights-and-media/insights/brochures/bsi-flex-701-nature-markets-overarching-principles-and-framework/>

3) 영국표준협회(BSI)의 시장 주도형 표준 개발 프로세스(Market-led process for standards development)는 전통적인 표준 제정 방식과는 달리, 시장 참여자 중심,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빠른 대응력을 중시하는 방식

- 해당 표준은 자연 시장에서 자연 프로젝트를 신뢰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며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프레임워크와 연계하여 기업의 자연 관련 정보 공시에 활용할 수 있음

〈표 2〉 자연 금융 표준과 TNFD 비교

구분	자연 금융 표준	TNFD 프레임워크
주체	영국표준협회(BSI), 영국 정부 지원	UNEP FI, UNDP, WWF 등 국제기구 주도
발표 시기	2025년 3월	2023년 9월 (최종 권고안 기준)
적용 대상	자연 시장 참여자 (크레딧 공급자, 검증자, 구매자 등 자연 프로젝트 실무 주체)	기업, 금융기관 등 자연 관련 리스크·기회를 식별하고 공시하려는 조직
주요 목적	신뢰할 수 있는 자연 투자 기준 마련	자연 관련 리스크·기회 공시 체계 수립 지원
핵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레딧 생성, 거래, 저장 과정</li> <li>- 환경 성과의 신뢰성 확보</li> <li>-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 관련 리스크·기회 식별 및 평가</li> <li>- 공시 지표 및 구조적 정보 제공</li> <li>- LEAP 접근법 제시</li> </ul>

- 자연 금융 표준이 도입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녹색 금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내 기업들은 자연 금융 표준을 참고함으로써 TNFD와 같은 글로벌 공시 대응, 글로벌 ESG 투자 유치 등에 활용 가능함

## Global News

### 2.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지속가능성 보고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

최두진\*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는 기후공시에 활용될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2024년 1월 12일, 호주 의회는 기후공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재무법 개정안을 발의함<sup>1)</sup>
    -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22일과 9월 9일 각각 상원과 하원을 통과함<sup>2)</sup>
    - 이에 따라 기후공시 의무화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됨
  - 2025년 3월 31일,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해당 개정안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담기 위해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Regulatory Guide 280)을 발표함<sup>3)</sup>
-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은 지속가능성 보고의 대상, 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공시 관련 향후 일정 등을 담고 있음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대상은 호주 회사법 2장을 적용받는 기업임
  -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아래 표로 요약할 수 있음

〈표 1〉 지속가능성 보고서 내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공개 기준	- 기업은 AASB S2 기준에 따라 기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특정 연도에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나 기회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단의 근거를 기술해야 함
예측 정보	- 미래를 예측하는 정보는 반드시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grounds)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AASB S2 부록 D의 '유용한 기후 관련 재무정보의 특성'에 부합해야 함
보고 시점	-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 보고서와 동일 시점에 제출해야 함
기후 시나리오	- 기업은 기후 변화법(Climature Change Act 2022)에 따른 온도 상승 시나리오를 최소 2개 사용하여 기후 회복력, 기후 관련 주요 재무 리스크 및 기회 등을 평가해야 함
온실가스	- 금융 배출량을 포함한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해야 함
비례성과 예외 조항	- 기업 규모에 따른 적용 완화 조치와 특정 조건(적용 불가능, 측정 불확실성 등) 하 예외 조항을 포함함

\* 한국ESG기준원 ESG평가본부 연구원, doojin.choi@cgs.or.kr

1) <https://treasury.gov.au/consultation/c2024-466491>

2)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Bills\\_Legislation/Bills\\_Search\\_Results/Result?bld=7176](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Bills_Legislation/Bills_Search_Results/Result?bld=7176)

3) <https://asic.gov.au/about-asic/news-centre/find-a-media-release/2025-releases/25-051mr-asic-issues-sustainability-reporting-regulatory-guide/>

- 지속가능성 공시 일정은 기업 규모별로 상이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 규모별 지속가능성 공시 일정

구분	시행 시기	대상 기업 기준 (아래 3개 중 2개 이상 충족)
Group 1	2025년 1월	- 직원 500명 이상 - 연매출 5억 호주달러 이상 - 자산 10억 호주달러 이상
Group 2	2026년 7월	- 직원 250명 이상 - 연매출 2억 호주달러 이상 - 자산 5억 호주달러 이상
Group 3	2027년 7월	- 직원 100명 이상 - 연매출 5천만 호주달러 이상 - 자산 2,500만 호주달러 이상

- 이번 가이드라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번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후 목표 축소 기조 하에서 발표된 내용이며, 내용 측면에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음
- Scope 3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한 측면에서 호주 입법, 행정부의 기후 목표 달성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 기업 공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정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direction power)을 명시한 점에서 신뢰성 관련 당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아울러, 기업의 기후공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기후공시를 지원하고 특정 상황에선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유지함